

창원지방법원 2022. 9. 15 선고 2021나57671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, 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승

담당변호사 박지원

피고, 피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율

담당변호사 박민건

변 론 종 결 2022. 8. 11.

판 결 선 고 2022. 9. 15.

제1 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. 5. 21. 선고 2020가단7777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256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1. 3. 5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(제1심 판결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포함).

○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3행의 “상고심에서”를 “상고심(2014므1421호)에서 2014. 4. 26.”로 고친다.

○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9행의 “위 부제소합의는 유효하다.”를 “위 부제소합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, 달리 피고의 강박이나 기망 또는 원고의 착오로 인하여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.”로 고친다.

○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6~7행의 “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.” 다음에 “(즉, 권리보호이익이 없다.)”를 추가한다.

○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8행의 “위 등기비용 반환 청구 부분도 부적법하다.” 앞에 “이 사건 소 중”을 추가한다.

○ 제1심 판결문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중 “원고”를 “피고”로, “피고”를 “원고”로 각 고친다.

2. 결 론

그렇다면,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하상제, 판사 장우영, 판사 진민희